

의안번호	2220139
의 퇴 인	이재정의원
회 답 일	2026. 9. 3.
추 계 번호	26C37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의3(지역서점등의 인증)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을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할 수 있음(제2항)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서점 가.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라. 그 밖에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지역서점협동조합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의3(지역서점등의 인증)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운영(안 제7조의3)

-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서점을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제도 운영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인증관리시스템 도입 여부와 인증제 운영을 위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인증제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4년 지역서점실태조사 기준 전국 지역서점 2,331개소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40개소가 인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6년 8월 현재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공고 등의 형태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 지방자치단체 지역서점 인증제 운영 현황

구분	조례·공고명
광역 (9)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기초 (20)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조례·공고명
	진천군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구미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지역서점 인증제 안내 공고
	완주군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공고
	순천시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공고
	공주시 지역서점 인증제 모집 공고
	창원시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공고
	광양시 지역서점 인증제 안내 공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